

용인시 택시쉼터 및 택시복지센터 운영 조례

제정 2019. 11. 8 조례 제1975호
일부개정 2020. 5. 15 조례 제2018호(민간위탁 관리 조례)
전부개정 2021. 7. 29 조례 제2162호(제명개정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용인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의과 복리증진을 위한 용인시 택시쉼터 및 택시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) ①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용인시 택시쉼터(이하 “쉼터”라 한다) 및 용인시 택시복지센터(이하 “복지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 한다.

② 쉼터의 명칭은 기흥 택시쉼터로 하고, 소재지는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528로 하며, 복지센터의 명칭은 용인시 택시복지센터로 하고, 소재지는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301로 한다.

제3조(기능) 쉼터 및 복지센터는 택시운수종사자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)의 피로해소, 휴식, 화장실 이용, 체력단련 등 근무환경 개선과 소통 및 복지향상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.

제4조(운영) ① 쉼터 및 복지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및 보안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.
② 시장은 택시운수종사자들이 편리하게 쉼터 및 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해야 한다.

제5조(위탁관리) ① 시장은 쉼터 및 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쉼터 및 복지센터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1. 쉼터 및 복지센터의 운영·관리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

용인시 택시쉼터 및 택시복지센터 운영 조례

법인 또는 단체

2. 용인도시공사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쉼터 및 복지센터를 위탁관리할 경우 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수탁기관의 선정 방법, 의무, 위탁계약의 해지 등은 「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제6조(시설 사용) ① 시장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쉼터 및 복지센터의 일부를 교통관련 단체 등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는 「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에 따라 부과한다. 다만,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사용료는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.

제7조(이용의 제한) 시장은 쉼터 및 복지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시킬 수 있다.

1. 음주 및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
2.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감을 주는 행위
3.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등

제8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용인시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, 「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<2021. 7. 29 조례 제2162호 전부개정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